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구자근 · 김상훈
진종오 · 추경호 · 이상휘
김승수 · 유용원 · 김은혜
박수영 · 이인선 · 김선교
김장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능화·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84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40억원”을 “100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(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u>40억원</u> 으로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)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탈루세액,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,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84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 --- ----- ----- <u>100억원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